

건설분쟁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 해결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면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부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이어 이번 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호에는 공정거래위원
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1. 목적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1985년 5월 15일 대한건설협회의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였다.

2. 기능

하도급법 제2조에 의거 법 적용 되는 건설하도급거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양 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관련 분쟁에 대한 사실조사 및 조정을 한다.

1) 하도급법 적용대상 요건

- ① 양 당사자의 거래 내용이 건설위탁에 해당되어야 한다.
- ② 양 당사자 모두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계약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이 넘어야 하며 또한 하도급업자보다 규모가 2배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거래 고발대상 행위

- ① 계약서 미교부
- ②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 ③ 자재·장비등의 매입사용 강제

- ④ 선급금의 미지급
- ⑤ 하도급공사 인수의 부당거부
- ⑥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 ⑦ 원사업자로부터 구입, 임대사용한 자재, 장비대금을 하도급대금 지급 이전에 결재 강요
- ⑧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 ⑨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미조정
- ⑩ 하도급 대금 부당 대물 지급
- ⑪ 보복조치
- ⑫ 하도급 공사대금 유보금 공제행위
- ⑬ 건설업등록증 대여행위
- ⑭ 하도급 통지 불이행
- ⑮ 무등록자 하도급 및 위장직영 행위
- ⑯ 기타 범위반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3. 분쟁조정절차 특징

- ① 하도급법 제2조에 해당되는 원·수급사업자간의 분쟁사안을 법적처리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재판제도와 비교하여 비교적 온화한 분위기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분쟁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결론 도달에 주력한다.
- ③ 분쟁당사자에게 해당사안의 특성이나 애로점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키거나 해소하기 때문에 분쟁 종결후의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④ 일반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없다.

4. 분쟁사안의 조사 및 조정

1) 조정기간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2) 조정절차

- ① 신고사안의 하도급법 적용 여부 검토
- ② 신고인 및 피신고인 출석 진술

③ 건설하도급분쟁조정 회의 소집

④ 조정안 심의의결

조정성립 : 합의서 작성 및 조정결과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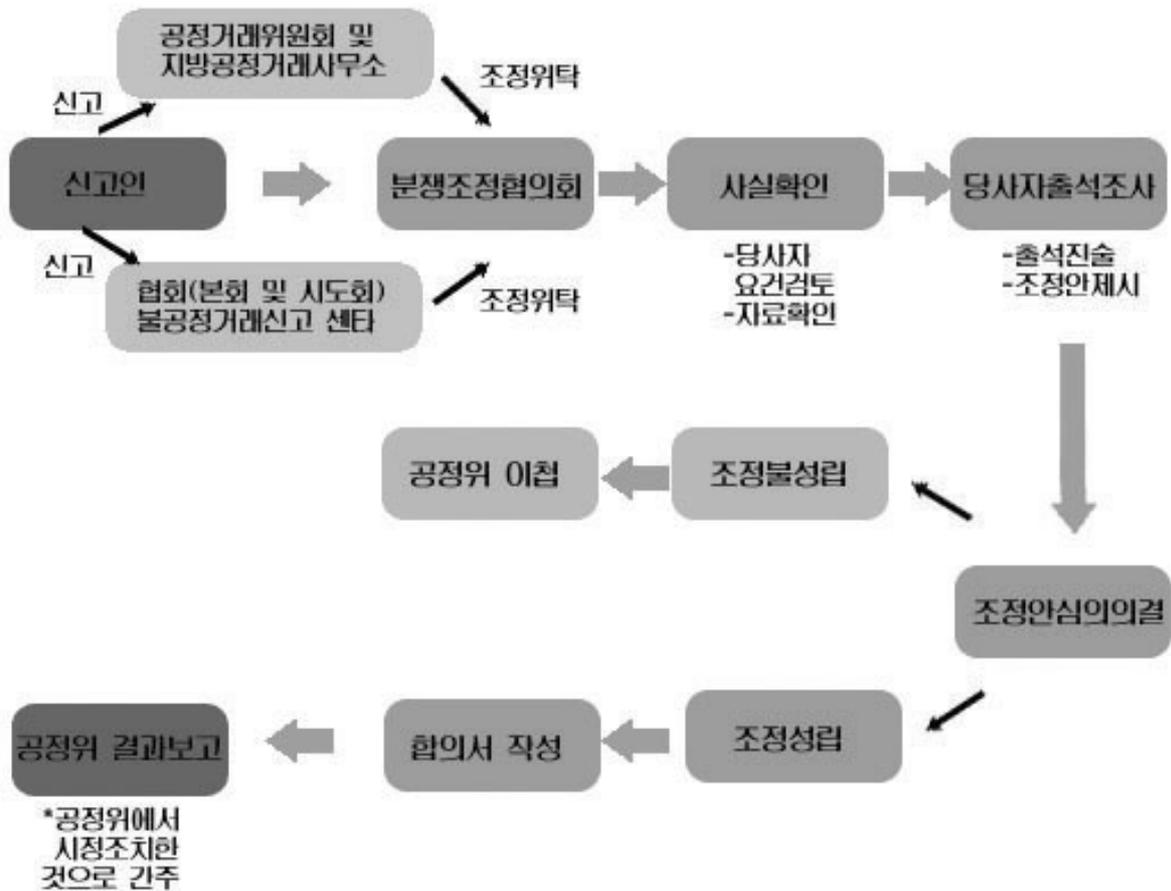
조정불성립 : 공정위 이첩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간주(하도급법 제25조제2항)

⑤ 공정위에 조정경위 및 결과 보고

5. 신고 및 처리절차



6. 신고사한 및 구비서류

① 건설하도급 위반 행위 신고서(공문형식)

6하 원칙에 의거, 주장금액 명시

※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하도급공사대금 미지급, 설계변경 등에따른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어

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대물변제, 부당감액 등)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 ③ 계약서 사본, 대금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 ④ 신고내용 관련 입증자료

7. 2005년도 분쟁조정 현황

1) 접수 및 처리현황

(2005. 12. 31 기준)

구분	접수건수			조정처리				조사조정 진행중
	공정위 의뢰	직접 접수	계	조정성립 (취하포함)	조정 불성립	반려	계	
건설	41	83	124	63	38	7	108	16
설비	4	10	14	3	6	2	11	3
계	45	93	138	66	44	9	119	19

2) 조정성립(취하포함) 금액

구분	조정성립(취하) 건수	조정성립(취하) 금액	비고
건설	63	7,522,266,022원	
설비	3	133,560,000	
계	66	7,655,826,022	

3) 신고사항 유형별 현황

구분	유형 계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어음할인료	물가연동	기타
			(설계변경 등)	지연이자	미적용	(부당감액, 선급금 등)
건설	142	98	18	9	4	13
설비	13	8	-	1	3	1
계	155	106	18	10	7	14

*접수건당 유형은 2개 이상 될 수 있음

8. 주요 분쟁조정 사례

1) 조정사례 1

△ 사건 개요

신고인 (주)○○인테리어는 피신고인 (주)△△건설 산업으로 부터 “○○○백화점 스포츠동 내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완료 하였으나 피신고인이 하도급대금 중 유보금으로 공제하여 미지급하고 있는 2천만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 처리경과

본 협의회 조사·조정결과 피신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미지급금의 지급유보 사유가 전혀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공사비 미지급금 및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공사비 미지급금 2천만원과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신고인은 신고내용을 취하하였으며 건설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의 심결처리로 분쟁사안이 종결되었음

2) 조정사례 2

△ 사건 개요

신고인 A건설(주)는 피신고인 (주)B종합건설과 “○○○건물 신축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완료 하였으나 하도급공사 대금을 전액 어음으로 수령함에 따라,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 처리경과

본 협의회 조사·조정결과 피신고인은 어음지급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신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신고인

은 신고내용을 취하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건설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의 합의내용대로 심결하여 분쟁사안이 종결되었음.

3) 조정사례 3

△ 사건 개요

신고인 (주)○○건공은 피신고인 (주)△△건설로부터 “○○○건물 스톤코트공사”를 '97년 7월초 시공하여 주도록 요청받고 '97년 7월말 시공완료 하였음. 그러나 '97년 11월에서야 하도급계약서가 작성 되었으며, 동 공사의 총기성 청구액 중 절반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받지 못했음.

신고인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지급요청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어 본 협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 처리경과

신고인은 상기공사를 '97년 7월말 시공완료하고 공사비 미지급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고인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치 않았음

본 협의회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가 지급하여 주질 않아 신고인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음.

조정결과 피신고인은 공사비 미지급금과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신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신고인은 신고내용을 취하하였고 건설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의 심결처리로 분쟁사안이 종결되었음

4) 조정사례 4

△ 사건 개요

신고인 (주)○○건설은 피신고인 (주)△△토건으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피신고인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 공사중지 기간 중 피신고인은 대금지급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하도급공사 대금 중 50%를 대물로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토록 신고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신고인은 이를 거부하였음.

신고인은 중단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사일정의 조정 및 공사재개 시기의 통보를 요구하였으나 피

신고인은 신고인에게 대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진행시킬 수 없다는 의사와 함께 공사 투입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신고인은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 처리경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결과 피신고인은 동 공사의 합의 타절에 따른 신고인의 정산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신고인은 신고내용을 취하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건설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간의 합의내용대로 심결하여 분쟁사안이 종결 되었음. ☺

9. 신고처 및 상담 문의

신고처	주소	전화	팩스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www.ftc.go.kr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공정거래위원회 (426-760)	02)503-1944	02)507-6563
건설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전국) www.ksca.or.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4층(135-701)	02)549-2105/6	02)516-5360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산, 경남, 울산)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부산채신보협회관 8층 (600-711)	051)466-3191/2	051)466-3244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광주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B/D 9층(501-030)	062)225-8462	062)225-8460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 충남, 충북)	대전시 중구 오류동 187-1 동아생명 B/D 8층(301-736)	042)531-8574/9	042)527-3064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 경북)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77-4 교원공제회관 6층(706-715)	053)742-9142/6	053)742-9149

※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인터넷은 공정위 본부사이트에 접속시 볼 수 있음

10. 불공정하도급 관련 상담 문의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4층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전화	02-549-2105/6	팩스	02-516-5360	인터넷	www.ksca.co.kr